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Korea Industrial Waste Landfills Association

수 신 전 회원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메일송부 병행문서]

참 조 법·제도 담당

제 목 폐유독물질(내화성 세라믹섬유) 처리방법 개선 관련
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폐유리섬유, 폐내화물 등)로 매립 처리되고 있던 내화성 세라믹섬유가 「유독물질 지정고시」 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24.4.11 시행)으로 유독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매립처리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의 경우 ①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 처분, ②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처분, ③ 고형화 처분만 가능

3.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동 물질의 3가지 처리방법이 적용 불가(고상의 가연성폐기물로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 처분 또는 소각처리 불가, 고형화 처분업체 없음)함에 따라 환경부에 매립처리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으며, 환경부에서는 협회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된 처리방안을 마련한 바,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 (환경부 심의 결과) 폐유독물질 중 내화성 세라믹섬유에 한하여 지정 폐기물 매립장에 매립처분 할 수 있도록 처리방법 개선
- ➔ 해 석 : 배출자는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로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매립장에서는 변경허가를 득해 영업대상폐기물에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추가 후 매립 가능

※ 폐유독물질(내화성 세라믹섬유) 처리방법 개선 관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공문은 협회 홈페이지(알림광장-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환경부, 폐유독물질(내화성 세라믹섬유) 처리방법 개선 알림(적극행정
위원회 심의 결과) 1부. 끝.

한국 산업 폐 기 물 매 립 협 회 장



담 당 김 찬 정책기획팀장 한 인 성 전 무 장 기 석 부 회 장 이 가 희 회 장 강 경 진

협 조

시 행 한매협 2024 - 45호 (2024. 7. 15) 접수

우 04508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1(만리동1가, SKY1004빌딩) 13층 / www.kiwl.or.kr

전 화 02-718-7900 전 송 02-718-7171 / krema@krema.kr / 비공개



환 경 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폐유독물질(내화성 세라믹섬유) 처리방법 개선 알림

1. 환경보전을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24.4.11일 시행)으로 내화성 세라믹섬유(고유번호 2024-1-1190)가 유독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시행일부서는 지정폐기물(폐유독물질)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유독물질 지정 이전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폐유리섬유, 폐내화물 등)로 분류되어 매립처분하였음
3. 이에 따라, 우리부는 내화성 세라믹섬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제6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과 -

- (안건명) 지정폐기물 중 폐유독물질의 처리방법 개선
- (내용) 폐유독물질 중 내화성 세라믹섬유에 한하여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매립처분 할 수 있도록 처리방법 개선
- (결과) 전원 찬성으로 가결

4. 유역·지방환경청, 각 지자체, 내화성 세라믹섬유 배출자 및 지정폐기물 처리업자 등은 상기 내용을 숙지하시어 내화성 세라믹섬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부 장관



수신자 한강유역환경청장(자원순환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자원순환과장), 금강유역환경청장(자원순환과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자원순환과장), 원주지방환경청장(자원순환과장), 대구지방환경청장(자원순환과장), 전북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서울특별시(자원순환과장), 부산광역시(자원순환과장), 대구광역시(자원순환과장), 인천광역시(자원순환과장), 광주광역시(자원순환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환경정책과장), 대전광역시(자원순환과장), 충청남도지사(환경관리과장), 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자원순환과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탄소중립정책과장), 경기도지사(자원순환과장), 경상북도지사(환경관리과장),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환경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원순환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자원순환과장), 한국폐기물협회,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한석유협회,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 현대제철주식회사

환경사무관 김민석 과장 전결 2024. 7. 5.
이승현

협조자

시행 폐자원관리과-1686 (2024. 7. 5.)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 <http://me.go.kr>

전화번호 044-201-7367 팩스번호 044-201-7376 / soilbotany@me.go.kr / 대국민 공개